

Minor

장애인

장애인 고용

Md.f.3

장애인 고용

1. 실직자 모임터 운영을 통해서 본 실직 장애우들의 욕구; 최홍수
2. 실업장애인 실태조사와 대책; 김농남
3.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취업 지원체계의 구축방안; 김용득
4.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독일에서의 실제 경험과 오늘의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면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5. 7급 지방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장애인 고용회의의 관행 및 가산점 제도에 의한 고용기회의 차등;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6. 장애인고용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7. 장애인 고용의 실태와 우리의 대안;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8. 장애인고용현황 및 대책; 직업안정국 1995년 4월

실직자 모임터 운영을 통해서본 실직 장애우들의 욕구

최홍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직자모임터 간사)

- IMF 사태 이후에 더욱 심각해진 실업문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상태에서도 위협받은 소외계층의 일할 권리를 많은 부분 상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노동을 통한 자아의 실현은 헌법에서도 보장된 권리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용의 낭비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될 것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전국민의 실업극복의지가 표면으로 부상되어서 실업극복국민운동이 결성되고 장애인 실직자 문제의 일시적 안전장치로 장애인 실직자 모임터는 시작되었다.
- 사회복지가 낙후된 우리나라에서 제도나 정책의 수혜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최하 빈민층으로 하락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심리적 공황감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곳에서도 장애인의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난다.
- 실업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의 토론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실직자 노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긴급구호 등의 대책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만 장애인 등 소외 계층들의 문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다.
- 장애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현실적인 욕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고자한다.

1.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공공근로업종 및 직종의 개발이다.

공공근로는 그 성격상 업무의 효율성과 더불어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의 소득보전부분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공공근로의 확대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공공근로에서도 소외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화 공공근로에서이다. 처음에 정보화 공공근로공고문을 보고 전화를 해서 장애인을 참여시킬 방안을 물어 보았으나 전혀 난감해하는 담당자들을 볼 수가 있었다. 정보화 공공근로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이다라는 도식적인 대화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만 할뿐이었다. 장애인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업무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정보화 산업에서도 장애인들은 학력이라는 장벽에서 또 한번 좌절해야만 했다. 비록 지금은 장애인 우대 조항이 삽입이 되었지만 업체 쪽에서 내세우는 조건이 장애인

의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른 성격의 공공근로도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는 것이 장애우들의 일반적인의견이다. 정보화 공공근로나 다른 공공근로 분야에도 장애인이 참여를 강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의 경우 장애인들이 직접 수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2. 장애인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IMF로 회사가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약한 장애우들이 정리해고의 총대를 매는 1 순위로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조사결과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임금근로자에 한해서만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알아서 그만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비록 직접적인 해고가 아니더라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해의식에 더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사례도 있었다.

3. 취업과 연계성이 높은 직업훈련을 해야 한다.

대부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재취업훈련을 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일산 직업전문학교나, 그 외에 산재하여 있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직업교육이 취업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설 속에서 직업재활이나 곧 바로 취업에 연계된 교육이 아니라 수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많은 분들은 교육을 받은 후에 지역사회나 자립작업장에 취업되기를 바랐다. 어떤 경우에는 직업훈련만 여러 차례 받으러 다녔다는 분들도 계셨다. 물론 직업 교육과정이 교육기관마다 다른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직업훈련 기관과 기업을 연결하거나 차라리 장애인끼리 생산설비를 구비하고 자립장을 만들어서 돈은 조금덜 받아도 좋으니 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았다. 직업훈련을 받고 100% 취업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각 기업체에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을 채용토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장애인의 취업율이 높아질 것이다.

4.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 생계 보장범위의 확대이다.

어떤 가정의 경우 실직해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사람이 있다. 회사의 부도로 퇴직금도 못 받고 생활자체가 엉망이 되어서 떠도는 사람도 있다. IMF시대의 실직자들의 생활양상은 장애인이나 비 장애인이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경우 워낙 저소득계층에서 일을 한 경우가 많아서 일을 못하게되면 완벽하게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들 쌀값이 없어서 모임터로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한끼 식사를 해결한 사람도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 봐 달라는 사람, 어디로 숨어버

리고 싶다는 사람, 이땅에서 장애인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며 떠나버리고 싶다고 호소하는 사람등 기본적인 먹거리도 챙길 수 없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시적인 생활보호도 확대하고 사회보장혜택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면 좋겠다.(일부 장애인의 경우 그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한시적인 생활보호에 대한 소식을 모임터에서 듣고 생계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고마운 인사도 전해들었다)

5.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공동 작업장의 확대와 관리방안의 확립이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특성상 실망 실업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정신 지체인, 심한 지체 장애인의 경우 이곳을 오실 때도 아주 힘겹게 오시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입장으로 막연할 따름이었다. 정신지체인 부모님들이 오셔서 말하시는 공통된 바람은 이들이 단순한 작업공정의 일이라도 몇 명이 함께 일을 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고 싶다는 것이며 실제로 그런 곳에서 일을 공동으로 하다가 일이 없어서 그만 두게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공동작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자가 있어서 국가에서 우선 구매제를 통해 작업장의 판로를 일부 보장해주거나 각 지방 자치체별로 공공근로예산의 일부를 투여하여 일을 나누어준다면 최저 임금도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그나마도 일이 없어서 그만두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장애인의 정보 산업 참여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정보화 교육에 예산을 배정토록 배려한 글도 보고 그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에 광고도 보았다. 우리 모임터에서는 대부분 단순업무에 국한된 장애인의 직업을 좀더 다원화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기자재를 갖추고 통신망도 설치하여 정보화 사업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보화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업을 수주하고 제작하고 납품하면서 소규모이지만 사업하는 경험도 나눌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 자치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계속 자금만 들이는 형식적인 직업교육에서 탈피하고 바로 자기일과 직결되는 책임감과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을 주는 형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들 가운데는 정말 이 사회에 어느 곳에 있어도 훌륭하게 일할 사람이 많이 있으나 그들의 노동력을 조직화해내서 사회의 생산력으로 끌어내는 연결 고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 민간과 고용촉진공단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정책 기구가 있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업장애인 실태조사와 대책

김동남(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1. 실태조사와 검토의견

- 실업장애인에 대한 표본조사가 아닌 「겨울나기 프로그램」 수혜자로 대상이 한정되고 자계식 조사로 주관적인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 근로능력 또는 근로의사가 없는 저소득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등이 포함되어 문제점이 있음
 - ※ 생활보호자가 58.4%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 37.5%를 차지
 - ※ 300인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수는 17.7%(512,324명) 감소에 비해 장애인은 5.3%(551명) 감소, 구조조정 1차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 공공근로사업 : 1단계 1,932명, 2단계 3,336명 계 5,268명 참여
-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사업주의 인식개선등을 통한 장애인고용 환경조성이 우선 해결 과제
 -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고용창출 및 고용증진등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에 공감

2. 장애인 실업대책

□ '98년도 추진실적

【 '98 정부실업문제종합대책 요약 】

- 기업의 일시휴업등 해고회피노력 지원
-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투자등 확대
- 실직자, 신규실업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 실업급여 혜택확충 : 1인이상 사업장 적용('98.10.1)
 - 4~12월까지 총 10조707억원중 9조6,307억원 집행
 - 공공근로 438천명, 해고회피 781천명, 직업훈련 363천명, 실업급여 441천명, 실직자대부 109천명, 생계보호등 855천명 수혜

- 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하여 정부 실업문제종합대책과 별도

로 장애인 실업대책을 마련, 시행완료

-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장애인이 우선해고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최저임금미달 장애인고용에도 지급임금의 60%를 고용지원·장려금으로 지원

※ 고용지원·장려금 : 27,929명 5,303백만원 지급

- 장애인 고용시설에 필요한 용자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무상지원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 고용시설자금등 유·무상지원 : 127개소, 12,079백만원 지원

- 장애인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자금
용자제도를 도입,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

※ 통근차량 용자 : 2,013명 18,069백만원 (500만원→1,000만원 인상)
직업안정자금 445명, 4,436백만원

-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률을 최고 90%, 3년간 지원하고 지급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

※ 신규고용 보조금 : 1,622명(중증 776명) 3,307백만원 지급

- 도시가로정비, 교통질서계도등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추진등 장애인 우선배려

※ 자치단체 1단계사업 : 1,932명 (지체1,579,시각92,청각151,정신 110)

○ 그 결과 '98년도 취업 장애인은 6,467명으로 전년 5,041명보다 28.3% 증가하는등 장애인고용이 정착단계에 있음

※ 장애인근로자 : '91년 11,305명 → '98년 22,400명('98.1% 증)

※ 장애인공무원 : '91년 1,689명 → '98년 3,413명(102.0% 증)

- 그러나 장애인취업이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

※ 규모별 취업현황 : 300인이상 12.5%, 300인미만 87.5%

□ '99년도 장애인 실업대책

○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99년 종합실업대책을 수립

【 '99년 정부종합실업대책 요약 】

- 일자리창출·유지
 - 구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
 - 서비스산업발전, SOC투자확대
 - 채용장려금제, 중소기업경영안정, 해외취업활성화
- 취업능력 제고
 - 수요자 중심훈련
 -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확충
 - 직업훈련 내실화 및 효율화로 취업률 제고
- 사회안정망의 확충
 - 실업급여 수혜확대
 -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지원
 - 취약계층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
-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
 - 직업안정망 확충
 - 실업자 D/B 및 Profiling, 노동시장정보체계 구축등

[장애인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 대책]

-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투자금액(7,650억원)범위내에서 2,112억원을 조기집행 자립기반 구축
 -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실업장애인 실태조사와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 수요자인 장애인중심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 대책 마련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품목으로서 관내에서 전량구매 가능한 특화된 표준사업장을 시·도별로 1개소씩 설립, 복지형 공장 모델화(16개소, 208억원)
 - ※ 외국의 사례 : 스웨덴의 SAMHALL, 일본의 제3섹터 공장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등이 운영하는 자립작업장을 사업장으로 유도, 중증장애인 고용확대(30개소, 150억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부담금감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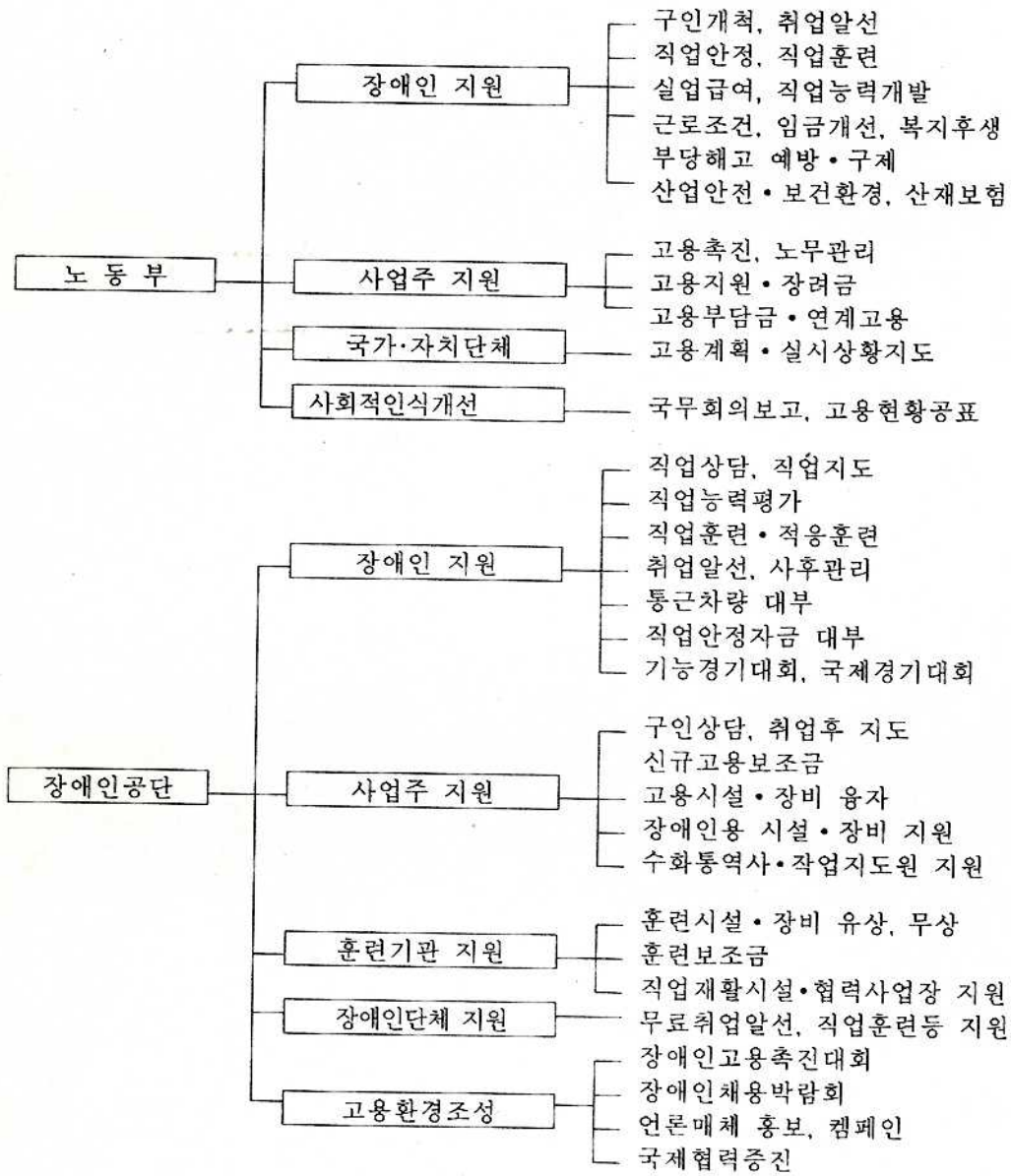
-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지원·장려금을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지급하되, 여성·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하여는 200%로 대폭 상향
- 중증장애인의 통근차량에 필요한 휠체어 탑재장치를 위하여 용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면제등을 실시하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조기달성 유도
-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창업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에게 창업자금등 지원(906억원)
 - ※ 창업과정, 구직기간중 직업능력개발과정 교육·훈련비 무료지원
- 장애인 잠재능력개발의 기초연구에서 직업재활, 현장적응지도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활종합센터 건립('99.10)
 - ※ 장애인복지관등을 지역고용안정센터로서의 기능 수행토록 지원
-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지체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영역확대를 위한 인터취업 확대
- 직업능력평가센터 확충, 장애인고용전산망 구축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취업서비스 제공

□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방향

-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경향은 일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Welfare to Work), 즉 예방적·생산적 복지인 고용중심의 복지(Workfare)로 전환되고 있음
-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진입이 원활하도록 제반 정책을 마련,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고용중심의 복지정책이 효율적
 - 각 부처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원칙하에 상호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앞으로 장애특성에 맞는 시간제근로, 재택근무등 비정규근로직종의 발굴 및 자영업장애인 창업지원등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지원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행(법개정안 국회제출)

- 우리부 Work-Net에 등록된 장애인 실업자의 profiling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유형·정도, 기능·소득수준등에 부합하는 실업대책을 제공
- 특히,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선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여 기준고용률 조기에 달성토록 할 계획임(법개정안 국회제출)
 - 또한, 정부투자·출연기관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법정 장애인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 사업주, 일반국민등의 고용환경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등을 민간 단체가 주도하여 실시토록 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등을 활성화
 - 시각, 청각, 정인지체 직업전문학교등을 조기에 건립하고 관련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

장애인의무고용 지원사업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취업 지원체계의 구축 방안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

“발암-우거움 / 정부:비면” 변화 방향의 차이도 무엇인가?

연구자들의 발표 내용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애인의 미취업상태에 대한 세 가지 형태 분류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장애인의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정책적으로 대단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의 경우 고용유지 및 창출대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이고, 생활안정대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취업의 경험이 있으나 비교적 장기간 실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고용대책에 31.4%, 생활대책에 68.6%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한번도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고용대책에 21.8%, 생활대책에 78.2%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전체 응답의 비율은 고용대책 30%, 생활대책 70%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발표자가 조사의 한계에서 지적한 표본추출의 문제를 고려하면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용대책과 생활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만성 미취업 인구에서 최근에 실직한 인구로 옮겨오면서 생활대책 대비 고용대책에 대한 강조가 일관성 있게 증가되고 있는 점은 두 대책의 상호적인 연계된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 본 토론자는 이러한 주제발표의 핵심적인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생활 안정 대책과 고용 대책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인 스스로 구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구직 유인 대책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1. 생활안정 대책의 과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의 일환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법의 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제도의 실시 시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 대책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

수당 등이 빠른 시일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각 수당의 지급 대상, 방법,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시 방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만성적인 미취업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용 대책 이전에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전의 장애인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제도와 각종 감면제도, 할인제도 등을 통합하여 수당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아래의 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상의 세 가지 각 수당이 각각 어떤 방향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명칭	기본 개념
장애수당 (안 1)	1) 연령: 장애아동수당 종료연령-노령수당수급연령 2) 장애정도: 일정한 장애정도 이상(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업에 향후 몇 년이상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
장애아동수당 (안 2)	1) 연령: 출생연령-고등학교 졸업연령 2) 장애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수준 이상
보호수당	1) 연령: 장애아동수당 종료 연령 이상 2) 장애정도: 전일로 보호가 필요한 수준

법정의 규정되었으나 형식의 하지 못함 경우.

2. 취업지원 대책의 과제

취업을 지원하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지원, 취업 관련 환경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지원의 측면은 교육 수준과 관련된 능력, 대인관계 등의 일반적인 문제해결과 관련된 능력, 특정 직무에 관한 기술적 능력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육 수준의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59.6%가 중졸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의 실업조사 결과에서 중졸이하가 29.6%인 점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범주	영역	문제점들	대안	
능력개발	지적능력	일반교육 기회의 저조	교육 기회 확보, 사회적 서비스 기능의 강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훈련 기회 확보 등	
	사회적 능력	사회적 교류 기회의 제한		
	기술적 능력	적합한 훈련 기회의 부족		
환경 확보 및 지원	물리적 환경	이동환경의 저조	편의시설 설치 독려, 의무고용 비율의 준수 독려, 차별금지 규정의 제정, 임금보조제도의 강구 등	
	심리적 환경	사업주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저평가		
	경제적 환경	임금보조		부분적으로 있지만, 임금보조 성격은 아님
		사업장지원		장려금, 지원금 등이 있음

둘째, 환경 확보 및 지원 분야는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은 편의시설 설치 독려, 의무고용 비율 준수 독려,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 임금보조제도의 강구 등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이슈는 이상의 조건들이 상호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고용대책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관계되는 책임 부처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 문제들이 단지 고용 문제라기 보다는 교육, 복지, 노동의 전체를 망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실업대책협의회'를 따로 두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산하에 실무 협의회를 두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두 번째 이슈는 임금보조 정책에 관한 것이다. 임금 보조 정책은 장애인이 취업 한 상황에서 장애로 인한 노동 손실 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 취업해 있는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이러한 임금 보조정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고용과 일반 고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임금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실시 방법의 수립이나 비용 조달의 면에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아주 열악한 임금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임금보조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구직유인대책

생활안정 대책과 취업 지원 대책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마련된다는 전제 위에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구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인 구직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직 유인 대책은 생활안정 대

책과 고용대책을 실효성 있게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구직 수당의 명칭은 장애인의 구직 활동은 일반인의 구직활동에 비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됨을 강조해서 이동수당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 호주 등에서는 'mobility allowance'라는 명칭으로 고용상태에 있거나, 직업훈련 상태에 있거나, 구직단계에 있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동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생활안정 및 취업지원체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안정 대책, 취업지원 대책, 구직 유인 대책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서의 개별적인 계획을 하나로 모은 정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니라 '큰 골격(원칙, 방향) 아래서 관계부서의 역할이 제시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내용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기능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 대책으로서의 수당제도의 실시, 고용증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환경 지원 계획, 그리고 이 두 축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직노력 유인 정책 등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다성적어업 즉 master plan이 필수이다!

전화: 02-521-5364 / 담당: 박옥순

* 행사장: 종로5가 기독교회관 (구 CBS 기독교방송국 건물, 영강빌딩 옆)

* 일시: 1998. 4. 23. 오후 2:00 ~ 4:00

제 18회 장애인 날 기념 초청 강연

이름: 이은실		
등록		
	A4	2/3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

- 독일에서의 실제 경험과 오늘의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면서 -

1998. 4. 23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7-061) 서초구 방배1동 922-16 경일빌딩

02-521-5364

한스-울리히 리노우(Hans-Ulrich Rhinow)

【약력】

뮌헨의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 연합회 회장

독일 교육 부처 자문위원 위원장

독일 시각장애인 학교 교장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 연합회 30차, 31차 회의 의장

순서

- 인사말 - 김성재(차에오게이문게여고 이사장, 한인대 교수)
- 기념강연 - 한스-올리히 리노우
- 질의 응답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

독일에서의 실제 경험과 오늘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한스-올리히 리노우

머리말

시각 장애인 교육의 역사는 2백년이 넘는다. 발렌틴 호위가 세계 최초의 시각 장애인 학교를 설립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몇 해 전인 1784년이었다.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성공적인 수업의 이 실패는 전세계적으로 모방되었다. 호위와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시각 장애인 교사들은 처음부터 시각 장애인들이 걸인으로서 길거리를 배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각 장애인들은 시민의 능력을 갖도록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인된 직업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법을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교육학적인 노력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각 장애인과 사회적, 직업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회에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교육학적인 개념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교사들이 좋은 교육과 충분한 열의, 방법에 대한 숙련과 풍부한 착상을 통해서 시각능력의 제한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면제시킬 마음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장애인 교육을 위한 공적인 조치들의 강도와 효율성을 보고서 제각기 다른 국가형태의 인간존중 태세를 읽어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실업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시각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개념적인 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재원을 의미있게 경제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와 직업학교의 교장으로서 나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한국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하게 되어 기쁘다.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나가면서 나는 시력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 부모들과 교사들, 가족사 교사들과 장애인 목회자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들, 사회학자들,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의 연사들, 정치가들이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되풀이해서 던지고자 한다.

1. 나는 장애인 교육의 현상황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35년간 독일의 특수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말할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른다.

2. 이 발제에서 나는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교에서의 특수한 조치들과 교육학적인 목표들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하고자 한다.

3. 그 다음 나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교육에 관한 독일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4. 끝으로 나는 독일에서 시행되는 국가의 보조와 법률들 가운데 바람직한 교육학적 목표들을 훌륭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40분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국어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이 강연은 1시간 20분간 진행될 것이다. 강연이 끝난 뒤에 진행될 토론에서 나는 여러분의 질문에 기꺼이 응할 것이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본문

1.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장애인 사업도 지난 35년간 엄청나게 바뀌어졌다. 독일에서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35년간 이루어진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독일에는 약 8만 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화령에 속한 시각 장애인의 수효는 1993년 현재 약 2,000명이며, 이들은 32개의 각급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 이외에 약 1,000명은 중북장애인들이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시각 장애인 아동들의 수효는 216명이다.

동시에 약 44개의 각급 특수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들의 수효는 3,340명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특임경험

이다.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두 개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오로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들만이 있었다. 그 때만 해도 시각장애인은 시각 장애인 학교를 다녔고, 적절한 시각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난 날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보면서 우리는 시각 장애 학생이 되고 말았다고 말하곤 한다. 60년대를 거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교실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탄생하였다. 이 새로운 학교들의 교사들은 특수전문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학생집단을 위한 교과과정을 신속하게 개발하였다. 그 당시 시각 장애인학교들이 중점을 두고 한 일은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문화적인 기본능력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직업적인 교사들은 외적인 업적능력과 탄탄한 전문지식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점자를 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글씨를 얼마나 빨리 쓰고 얼마나 정서법에 맞게 글을 쓰는가를 훈련받았다. 그들은 이 점에서 시력을 갖고 있는 동료교사들보다 월등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활동을 해나갈 때 계속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일터로 가는 길을 혼자 찾아가는 일조차 거의 하지 못했다.

7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서 사람들은 사회교육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73년 비인에서 열린 독일 시각장애인 교육자 대회에서 하이델베르크의 후델마이어 교수는 시각장애인의 사회교육학적 양육에 관해 깊은 강연을 하였다. 그는 기동성, 자립성, 적절한 자존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대회에 참여한 사회교육학자들, 특히 기숙사 학교의 교사들이 행한 교육활동은 이 때로부터 큰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이래로 우리는 시각 장애인학교 기숙사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의 독자적 성격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 기숙사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머무르는 동안 그들을 감독하고, 일과를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놀고, 그들이 매일 아침 정시에 학교에 오도록 예씨야 했다.

오늘날 기숙사 교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실생활 능력을 가르치고, 이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실생활 상황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위생처리, 식사법, 옷 갈아입기, 물건사기, 음식준비, 세탁, 다리미질, 가방꾸리기, 사교활동 등이 그것이다. 장애인 학생들을 처음부터 돌보는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기숙사 학생 집단은 스스로 꾸리도록 지도받는다. 각 집단은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위한 구내를 조직하고, 각 집단의 부엌에서 모든 것을 손수 마련하고,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 통을 깨끗이 정돈한다. 하얀 지팡이에 의지하여 혼자 활동하는 것은 이를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시력을 가진 사람이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거들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열심히 개발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에 국가는 학교건축을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지원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은 이 시기에 새 건물들을 지었다. 이 학교들에는 자체 수영장, 체육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달리기 시설을 갖춘 특수체육장이 점점 더 많이 지어졌다. 교과과정은 개정되었고, 학교에 교육기자재와 특수한 작업도구들을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일도 개선되었다.

80년대에는 시각 장애인 아동들의 부모들은 이들을 학교에 통합시킬 것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을 부모 집에서 멀리 떨어진 특수기숙사 학교에 보낼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장애인 자녀들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다. 연방의 모든 주(州)에서는 각각의 학교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험과 나란히 특수교사들을 통한 값비싼 양육제도도 점차 발전되었다. 국가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현대식 신설학교들이 병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유럽의 몇 나라는 시각 장애 아동들을 일반학교에 통합시키는 급진적인 길을 택했다. 각 시각 장애 아동은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독일은 여전히 타협책에 머물러 있다. 일반학교에서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양육되는 한에서 장애 아동들은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일반학교들은 장애 아동들을 받아들이는 데 복합적인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요즈음 그럴 용의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학교생활을 하는 장애 아동들의 비율은 평균 35%로 높아졌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중복 장애 아동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시력손상을 가진 정신장애인이거나 지체 장애 아동들이다. 이러한 중복 장애 아동을 위하여 개별학교들에 독자적인 부서가 도입되었다. 뷔르츠부르크 장애인 시설기금과 같은 사적인 단체들은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 잘 정비된 학교제도를 만들었다. 이 어린 사람들의 직업적, 가회적 통합이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중복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이 세워졌고, 훈련시설들이 부속되었다.

시각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은 1976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소들을 점차 인수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세 개의 특수 직업훈련소들이 만들어졌다. 이 세 직업훈련소들은 매우 성공적인 코스를 개발하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였다. 1992년까지 이 훈련소들은 졸업자의 80%가 일반 노동시장의 확고한 노동관계에 들어서도록 일자리를 앞선할 수 있었다. 이 숫자는 지난 몇해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997년에는 겨우 20%의 졸업자들만이 확고한 직업활동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1998년 8월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될 시각장애인 교육학 대회에서 "생활전망"이 주요주제로 선정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주제에는 시각장애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커다란 우려가 표현되어 있다. 수많은 개별주체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확고한 노동관계에 들어서지 못할 경우 이들에게 어떻게 의미있는 삶을 준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절박한 질문에 대답할 예정이다.

2.1 특수교육을 위한 조치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일할 때에만 학교교육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자녀들의 방에서 태만하게 처리되는 일이 학교에서 완벽하지 않게 처리되거나 혹은 전혀 처리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 장애 아동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와 학부모의 협조는 장애 아동들의 경우 더욱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각 장애 자녀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경험이 학부모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우 불안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다. 시각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25년도 더 넘게 시각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왔고, 이들을 위한 매우 전문적인 조기 조언과 지원을 요구해 왔다. 오늘날 이와 같은 조기 조언과 지원은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과제로 공인되어 있다. 해당 부모들이 알려지는 즉시 경험 많은 시각 장애인 교사들이 이 부모들을 찾아가 자녀의 조기 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조언하고 부모들을 지원한다. 1993년에는 약 1,700명의 시각 장애 아동들이 부모의 집에서 돌보아졌다. 요즈음 이들 교사들이 방문하는 주기는 14일이다. 조기교육담당자들의 여행비용이 지원되고 있고, 이들은 조기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계속 교육에 있다. 이들은 몇 해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특수한 교육학 분과를 개발해 왔다. 일년에 한번씩 조기교육자들은 학부모들을 학교에 초대하여 만남의 날을 주관한다. 시각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을 만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교환한다. 학교 방문을 통해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너가 어떤 기회를 향유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이처럼 학부모들을 조기에 돌보기 시작한 이래로 신입생들의 대부분은 학교에 잘 적응하게끔 되었다. 예전에는 아동들이 학습능력을 가질 때까지 한 해가 꼬박 걸렸다. 그들은 아동교육의 초기단계에 소홀히 취급되었거나 과중한 부담에 시달렸다.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빠뜨려졌거나 너무 적은 것이 요구되었다. 시각 장애 아동들은 출신해서 배울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엄마들은 예컨대 부엌일을 할 때 어린 자식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구들을 손에 쥐어 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직관적인 낱말들로 설명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조기교육자들은 학교에 처음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성인들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고, 훌륭한 관찰력을 가져야 하며, 풍부한 감정이입능력(손끝 촉감)을 가져야 한다. 일터로 진입할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하고 안전한 운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각 장애 아동들이 일반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일반학교 교사들을 조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일반학교 교사들은 장애인 아동에게 잘못된 동정심을 품은 나머지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거나 학교에서의 성적 경쟁에서 애초부터 후한 점수를 주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학교사들은 시각 장애 아동에게 기하를 완전히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기하의 지식과 경험은 시력손상 아동의 공간지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공간지향능력이 약한 시각 장애인 아동은 익숙한 학교교실에서 자기자리로부터 일어나 비품함 옆에 서 있는 교사를 쉽게 찾아간다. 그러나 제 자리로 돌아올 때 이 학생은 길을 잃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더듬거리곤 한다.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는 각도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발달심리학에 따르면, 공간지향능력은 12세에 확고하게 자리잡으며 그후 이 능력이 개선되는 정도는 극히 미약하다고 한다. 공간지향능력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시각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통합을 보다 쉽게 하는 실제적인 숙련기술은 참으로 많이 있다.

일반학교에서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체육수업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 물론 시각 장애 아동들에게는 자연적인 한계가 있다. 어린 학생들은 축구놀이를 즐긴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부적합한 놀이이다. 그러나 시각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장애인교육을 조인하는 사람들은 이 시각 장애 아동들에게 체육교육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시각 장애 학생들의 육체적 발달에 해로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다른 조연자는 교사가 시각 장애인들이 습득한 기술과 보조기구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다. 나는 음악적 재능이 풍부한 한 젊은이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재능있는 피아노 연주자였으나, 일반학교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시각 장애인용 악보를 제 때에 제공하지 못했다. 이 젊은이는 소리를 듣고서야 한 편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악보를 지각하면서 처음보는 작품을 연주하는 법을 제 때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음악을 공부하면서 볼림없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시각 장애인이 주변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흥미있는 것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그대로 눈에 띠지 않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회적 접촉을 쉽게 만들 것이다. 서양 장기를 두는 사람은 아마도 장기를 둘 수 있는 상대를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발견할 것이다. 장애 선수들은 우리에게 이에 관한 수많은 예를 언제나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 학생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분류하고 사회교육적 시각에서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시각 장애 아동들이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특수학교 교사들은 비장애 학생들과의 접촉을 장려할 수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계획되고 조직된 만남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협조라고 부른다. 학교행사, 소풍, 학급잔치, 학교축제, 적합한 학과에서의 단계적인 공동수업 등이 이에 적절하다. 시각 장애 아동들은 비장애인들과의 실제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경험을 모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과 적절히 접촉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서로 실망하지 않게 된다. 사회적인 통합은 여러 측면에서 잘 준비되어야 한다.

학교에 장애 아동들이 통합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학교 제도가 이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시각 장애 학생이 특수학교의 기초단계에서 일반 김나지움에 진학하게 되면, 이 학생은 쓸 데 없이 혹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기자재의 부족을 일반 김나지움에서 보충하여야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2.2 사회 교육의 몇가지 중요한 목표들

이 장연의 다른 문맥에서 나는 이미 아동의 다방면적인 자립성을 기르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한 바 있다. 몇 년 전 기숙사 학교 집단의 자조를 도입하였을 때, 한 학생의 할머니가 몹시 화가 나서 나에게 달려와서는 장애 아동을 어찌하면 그렇게 조그만치의 사랑도 없이 대할 수 있는가 항의하였다. 내가 그분의 손주에게 스스로 빵을 자르고 버터와 잼을 바르도록 요구하였다고 질책하였던 것이다. 이 할머니는 그분의 손주가 겪고 있는 장애를 아직 소화하지 못했고, 손주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그를 끊임 없이 돌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련한 아이를 진짜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이 부인에게 행위의 연관을 설명하고 손주가 단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너무도 많은 특수교사들이 장애 아동을 지나치게 도우려는 중후를 보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가족 가운데 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곤 하였다. 한 학급의 시각 장애 학생들과 학교의 시골 체류지에 이주일 동안 머문 후 집으로 돌아 왔을 때 나는 어린 아들과 산책을 하던 도중 그의 손을 항상 물잡고 다녔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특히 자동차 통행이 많지도 않은 길을 건널 때 그랬다. 교사강습회와 학교감독위원회에서는 지려 지나치게 장애 학생들을 돕는 일을, 근본적으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아동 스스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 혹은 최소한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우지 못한 것을 아동의 손에서 떼어내서는 안 된다. 한 자투의 칼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다가 다칠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위험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가되면 어린아이에 기회를 주어 칼을 잘 주의 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접적인 생활세계의 여러가지 일들을 알게 하는 수업은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의 처음 몇 해 동안 매우 중요하다. 학생은 스스로 활동하면서 주변환경과 일차적인 경험을 나누고 이를 명확하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의 관계들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애인 학생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소극적인 경향을 제거하고, 발견의 기쁨을 크게 갖도록 하고, 그의 개념세계가 분명한 직접경험을 통해 생동적인 것이 되게 하고 현실주의적 삶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애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1970년 미국 모델에 따라 운동성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시각 장애인 교육은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회고 긴 지팡이를 이용하여 촉각기술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이 지팡이는 다음 발자국을 땀 때마다 시각 장애인의 발걸음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키고, 장애물들을 제 때에 알리고 다른 감각능력들과 더불어 공간 안에서 계속 스스로 움직일 때 방향감각을 갖도록 돕는다. 이 훈련은 처음에는 기숙사와 학교 구매에서 시작하지만, 곧 가까운 주거지역으로 연장되고, 도시의 구매지역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공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18세의 시각 장애 여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처음으로 주요간선도로의 신호등 건널목을 어떻게 건너는가를 감명 깊게 주시한 적이 있다. 스스로 처음 해 보는 이 일이 성공을 거두자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였다. 이 처녀는 개인적인 운동의 자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마를 위해 처음으로 가까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내민 채 집으로 돌아오는 다섯 살 짜리 비장애 아이를 대동하였다. 우리는 시각 장애인이 스스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들을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작업장에서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알선할 수 없다. 좀 더 큰 시각 장애 아동들은 놀이터, 청소년 그룹, 교회, 마을의 젊은이 모임 등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금방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사람은 비장애인들에게 부담감을 준다. 어떤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곳에서는 좋은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독일 학교에서 사회교육을 강화해 왔다. 학생들은 더욱더 장애인들과 자발적으로 대화할 나누고 그들의 미학적 감각을 고려하고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접촉형태에 걸맞는 놀이 규칙을 존중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인간상호간의 행동은 개개인의 행동능력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태도와 지식, 다른 사람의 행동방식과 기대에 대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시각 장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계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몇 가지 중점들만을 다루고자 한다. 살아가면서 제 때에 제대로 된 식사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직장동료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한 번 이상 직장의 식당으로 동행하지 않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 스스로 충분히 위생처리를 하지 않거나 불쾌한 체취를 내뿜거나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영광으로 옷을 입거나 몸을 끊임 없이 흔들거나 눈을 자주 부벼대는 시각 장애인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내가 시각 장애인 학교의 신입생 학급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을 때면, "너 누구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니?", "네 이름은 뭐니?" 하는 질문을 금방 받은 한다. 사람들은 시각 장애 아동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조그만 잔치볼 즐기고, 자신의 거주 공간과 잠자리할 스스로 형성하고 꾸미고, 대화상대자인 나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아 참 좋은 학교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시각능력을 받아들이고 좋은 시각보조장치들(확대경, 망원안경, 복수전등, 텔레비전 판독장치, 큰 글씨체 등)을 활용하는 법을 조기에 습득하여야 한다. 그들은 몇 마디의 말로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의 시각장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나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시각 장애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시각정보들을 가질 기회가 참으로 적어서 교육학적 계몽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줄로 믿는다. 부모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간단한 설명과 신체접촉을 통하여 계몽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추천할 만하다.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개념들은 결국 촉각을 통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2.3 직업 교육의 몇 가지 측면들

시각을 손상당한 학생들은 중등학교(하우프트 슐레)를 졸업한 후 보통 직업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직업교육은 개별적으로 기업의 직업훈련소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특수학교의 한 부서로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세가지 직업훈련시설들은 직업훈련을 위한 약 400개의 자리를 갖고 있다.

이 자리들은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진다.

a) 수공업기술 분야 : 바구니, 소시지, 원예용 기구, 금속가공 제조자

b) 가계 분야 : 가계활동 보조자, 가계운영자

c) 상업 분야 : 사무보조자, 사무직 상인, 사무실 통신 보조자, 교환원

최근 성공적으로 직업훈련을 마치는 일은 위험받고 있다. 능력있는 시각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장애인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중복장애인들이 점점 더 많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불려 받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직업훈련센터에는 학습장애가 있는 시각 장애인들의 비율이 1987년에서 1994년 사이에 8%에서 45%로 높아졌다. 행동장애가 있는 젊은 시각 장애인들의 비율은 3%에서 25%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늘어나는 부담을 소화하여야 했고,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들의 질은 떨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았다.

장래에는 직업훈련을 시작할 때 애초에 어떤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학교에서 성적평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교의 주요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렇게 될 때에만 잘못된 직업선택과 직업교육의 실패가 저지될 수 있다. 장애인 학생들이 조기에 직업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직업선택은 중등학교를 졸업하기 한 해 전에 시작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직업 실습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졸업반학생들을 위해 노동청이 직업을 찾기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졸업반 학생들은 4주일까지 직업 훈련소를 다닐 수 있다. 거기서는 이 학생들이 실제로 알아둘 수 있는 두 가지 적합한 직업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일류 통해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알게 되고, 이 작업활동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더 잘 판단하게 된다.

정상시력의 25분지 1에 불과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법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꼭 필요한 까닭은 학생들이 재능이 있을 경우 행정분야와 상업분야의 사무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는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는 이와 관련해서 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법을 익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반권위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노동의 덕들이 폄하되었다. 정시에 직장에 오지 않고 철저하고도 주의깊게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직업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더욱더 존중되어야 한다. 현대의 노동세계에서는 핵심적인 능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팀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능력, 조직능력, 탐지능력, 일을 잘 해 보려는 동기와 참여, 결단력과 행동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등이 그것이다. 나는 메르세데츠 벤츠 공장의 직업훈련소에서 이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고 그 방법과 성과에 늘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경험

란 적이 있다.

실업률이 3% 선 이하로 뚜렷하게 감소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을 장차 직업세계에 통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2.4 장애인들의 통합을 국가가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장애인들은 직업교육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의 장려정책에 이제까지 줄곧 의존해 왔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한 통합과정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국가 규정들과 시행령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는 순서에 따라 몇 가지 규정들과 시행령들을 열거해 보려고 한다.

1) 건축과 설계를 맡은 건설관계자들에게 장애인들의 애로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들. 장애인용 바퀴의자에 맞게끔 도로와 보도 사이의 턱을 낮추는 일, 이 바퀴의자가 통행할 수 있는 문과 화장실의 설치.

2) 16 명 이상의 직원을 둔 관공서와 회사가 전직원 중 장애인의 비율을 6%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이 비율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국가에 조정과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 과세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3) 기본법(독일헌법)이 규정한 장애인들의 동등권 규정. 기본법은 어느 누구도 장애로 인해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음.

4) 장애 대학생들을 위해 음독해 주는 요원의 배치.

5) 이미 직업생활을 하였으나 시각 장애인이 됨으로써 더 이상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한 직업재훈련 조치.

6) 시각장애인이 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값비싼 보조기구들을 설치해 줌으로써 기업을 지원하는 일.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장애인들을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에 통합시키는 일은 장애인 사업의 최대 목표였고, 지금도 그렇다. 국민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위기의 징후를 보이는 노동시장이 이 과정을 점점 더 어렵게 하면 할수록, 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과 경영자들의 참여와 창의성이 더욱더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사회를 필요로 하고, 사회는 장애인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트케커는 1976년 뮌헨의 시각 장애인 학교 기념 강연에서 말한 적이 있다. 나는 한국에서 장애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숙녀분들이 힘과 확신을 갖기를 원하며,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초·대·합·니

새봄을 맞이하여 어려운 우리 생활에도 생명의 환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는 4월 장애인 주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독일의 시각장애인 학교 교장으로 30여년 넘게 재직한 한스-울리히 리노우(Hans-Ulrich Rhinow)씨를 초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 경험'에 관한 강연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스씨는 독일의 실제 경험과 최근 독일 연방 공화국 내의 사회 발전 상황을 참조하여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강연회가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 성 재

.....● 아 래 ●.....

- 일 시 : 1998년 4월 23일(목) 오후 2시-4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강당(전화 : 763-9746-7 / 종로5가 연강홀 옆, 구회관)
- 주 제 :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제 방안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 강연자 : 한스-울리히 리노우(Hans-Ulrich Rhinow)

[약력]

뮌헨의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 연합회 회장
 독일 교육 관련 부처 자문위원 위원장
 독일 국립 시각장애인 학교 교장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 연합회 30차, 31차 회의 의장

* 주차료가 매우 비쌉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로동 지원할 수 없사오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사호번호
1993	A4	74 장애인

7급 지방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 장애인 고용회피의 관행 및 가산점제도에 의한 고용기회의 차등 -

1993. 12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12.16. 3회)
 대표: 이 건 취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원

참가 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독교인권협회-대전지부, 한국밀알선교단-대전지부, 전국지체장애인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원

연락처 -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서울 : (02) 796 - 4280 , 충청 남 : (0416) 856 - 6628 , F A X : (02) 796 - 4281

성 명 서

전국 4백만 장애인들은 '93년도 충청남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정강용"씨에 대한 위법부당한 법의 적용 및 행정관행에 대하여 규탄하고 이의 올바른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88년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정강용"씨는 6년간 취업을 위해 여러차례 공·사기업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필답고사에서는 타응시생보다 월등한 성적을 획득하고서도 면접과정에서 탈락하는 어려움을 감당하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만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고히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93년 9월 8일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임용공개 경쟁에 응시 78.33을 취득하였다.

당시 합격점으로 발표된 82.22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 제 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9조의 규정에 근거 5점 가산이 적용된 것으로 장애로 인해 부득이 병역면제된 장애인들에게는 위법부당한 법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의한 임용의무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측은 7급 공채과정에 2%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그 법의 충실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정강용"씨가 불합격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헌법 제 11조 1항의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 동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 34조 신체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는 장애인 2%의 의무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0.58%에 불과한 실정으로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위법부당한 법적용과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기업에 떠맡기기 보다 국가기관에서 먼저 솔선해서 침해당한 장애인의 노동권회복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당국자와 충청남도 지사는 지금이라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정강용"씨에 대한 불합격 처리를 취소하고 국민과 4백만 장애인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 ⊙ 총무처와 충청남도는 "정강용"씨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합격을 인정하라!
- ⊙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
- ⊙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993. 12. 16. ~~16~~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참가 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독교인권협회-대전지부, 한국밀알선교단-대전지부, 전국지체장애인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연락처 -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서울 : (02) 796 - 4280, 충남 : (0416) 856 - 6628, FAX : (02) 796 - 4281

1. 들어 가 며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현실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촉진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차 법정 의무고용률 2%에 훨씬 못미치는 0.66% 만을 장애인으로 고용('93 노동부 국감자료참조)하고있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무원직에 있어서조차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준수되지 못하는 데는 크게 고용주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심리적 요인과 장애인 당사자 및 고용주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애인고용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요인(가산점제도)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7급 중견직의 경우는 이상의 두가지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장애인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무원 입용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의 쟁점이 되고있다.

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5급직은 가산점적용을 하지않고, 하위직인 9급직은 대개 장애인을 별도모집하고있어 제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으나 7급 중견직의 경우는 가산점제도는 적용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별도 모집은 하지않고있어 7급 공무원직에 있어서의 고용기회는 사실상 박탈되고있는 실정이다.

※ 지방 공무원 직급별 가산제도 적용 현황(표)

직 급	가 산 점 적 용 여 부	장 애 인 별 도 모 집		비 고
		별 도 모 집 함	별 도 모 집 안 함	
5 급	가산점 적용하지 않음	-	0	
7 급	가산점 적용함	-	0	
9 급	"	0	-	

* 가산점 적용 근거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 장애인 별도모집 근거 :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2. 쟁 점 사 항

가. 군복무 가산특전제 적용에 의한 고용기회의 차등

0 군복무가산특전제 의 내용

-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가 취업보호실시 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준용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채용시험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주는 제도

0 가점비율

- 법률규정상 가점비율(표)

구	분	가 산 점	비 고
국	유 공 자	10 %	만 점 기준
제	대 2년 이상 복무자	5 %	"
군	인 2년 미만 복무자	3 %	"

- 이상의 가점은 만점을 기준으로하여 각 과목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실제 시험에서 응시자에게 적용하는 가점정도는 총점에서(9개과목기준) 최소 27 ~ 90점까지, 합격선인 평균점에서는 합격선에 따라 15 ~ 40점 정도의 가점적용여부에 따른 적용자와 비적용자간여차등유발

0 근거법령

- 헌법 제 32조 제 6항, 동법 제 39조 제 2항
-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2항, 동법 제 70조, 72조 동법 시행령 제 59조, 89조

0 문제점

(1) 병역 면제자에 대한 극심한 고용기회상의 차별야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군복무자 등에 주어지는 가산점 혜택은 장애로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장애인 뿐아니라 여성·극빈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취업보호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고용 이전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서게 함으로써 고용기회상의 극심한 차별을 야기

(2) 특정인에 대한 이중적 복혜로 형평의 원칙에 반함

- 군복무자는 공채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일정비율의 점수를 가산받아 다른 응시자 보다 우선 고용될 기회를 보장받는 외에도 보상금, 연금, 일자리 주선, 채용 후 연한 인정 등의 별도의 복혜를 받고있다.

- 따라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군복무가산제의 적용은 모든 군복무자에게 고용이전 단계인 고용의 기회에 있어서 까지 복혜를 주는 이중의 혜택이므로

- 장애인이 신체적 불편함으로 고용에서 차별받음과 가산점제도에 의한 감점을 받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공채에 임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때 특정인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형평성을 잃은 제도임

* 채용후 연한 인정제

『공무원 보수 규정』 제 8조에 의해 군복무자가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고용될 경우 그의 군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년수로 산정하며 초임호봉을 확정토록한 군복무자에 대한 우대제도로 군복무자는 채용즉시 3호봉으로 책정